

## 2013년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13. 10. 21(월) 11:00

2. 장 소 : 대표이사실

3. 참석임원: 이사 총 7명중 5명 참석

대표이사 장영순, 이사 이상주, 이사 김정환, 이사 김영길,  
이사 홍인식

참석직원: 도경옥원장, 이상민국장, 김병관원장, 이만섭실장,  
손소희법안국장

4. 심의안건: 1) 2013년도 예림원, 예림공동생활가정, 예림일터,  
인천예림학교 2차추경예산(안)

- 2) 법인수의사업 건
- 3) 기타토의(안)

### 5. 회의내용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장영순의장 :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2) 전차회의록 접수승인

◦ 장영순의장 : 간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  
이사진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승  
인하기로 선포하다.

#### 3) 안건상정 및 결의사항

(1) 제1안건 2013년도 예림원, 예림공동생활가정, 예림일터, 인천예림학교 2 차추경(안) 심의

- 장영순의장 : “각 기관의 2013년 2차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 제안설명은 각 기관별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이상민국장 : “예림원 추경사유로는 7월부터 생계비 지원 증액(15,667,698원), 기타보조금 발생(사업주환급교육 5,000,000원·고용장려금 4,000,000원·기타보조금 1,000,000원), 기타지정후원금 증액(20,000,000원)됨에 따른 세입·세출조정과 체험증 사업의 별도계정 신설에 따른 세출 세목 변경에 따른 예산서 조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예림원 2013년 2차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도경옥원장 : “예림공동생활가정 추경사유로는 외부지원사업 선정(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지정후원금 증액(15,470,000원)과 직원 입퇴사로 인건비가 변경됨에 따라 세입·세출조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예림공동생활 가정 2013년 2차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김병관원장 : “예림일터 추경사유로는 기타보조금 증액(사업개발비 4,000,000원)됨에 따라 세입·세출조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예림일터 2013년 2차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이만섭실장 : “인천예림학교 추경사유로는 1층 본관 대수선공사로 증액(105,000,000원), 방파후 강사비 증액(6,420,000원), 목적사업비 발생(인건비 116,470,000원·사업진행비 67,361,000원)됨에 따라 세입·세출조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인천예림학교 2013학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다.
- 김영길이사 : 2013년도 2차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니, 부득이한 수입 및

사업의 변동에 따른 합당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김정환이사 : 동의에 제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합니다.”라고 답하여 제1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2) 제2안건 법인수익사업 건

- 장영순의장 : 법인 내 수익사업 건을 상정하며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손소희국장 : “법인에서는 카페 ‘비반트’를 손과손 수익사업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하고자 합니다. 카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제과점(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의 수익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이며, 추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전문가(바리스타)와 서빙(직격장애인)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다
- 흥인식이사 : 법인이 목적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사업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카페운영은 휴게음식점에 속하기 때문에 보건소 위생과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므로 설치 절차에 따라 시설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김영길이사 : 동의에 제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합니다.”라고 답하여 제2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5) 기타토의

- 장영순의장 : 기타토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다.

## 6. 폐회

- 장영순의장 : 폐회동의를 확인한 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12:00에 폐회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다.

2013. 10. 21.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순



이    사

이상주



이    사

김정환



이    사

김영길



이    사

홍인선

